

제3절 공동행위의 유형(법 제19조 제1항)

1. 가격협정(제1호)

- 가격에 관한 합의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가장 전형적인 공동행위로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주어지고, 성립되기도 쉽기 때문에 실시되는 경우도 많다.
- 일반적으로 가격인상을 내용으로 하지만, 가격의 유지나 가격의 설정도 포함.

2. 거래조건협정(제2호)

- 거래조건에 관한 합의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예, 보증수리 유무, 상품의 인도방법, 신용판매의 금지 등)

3. 공급제한협정(제3호)

- 공급제한에 관한 합의란 생산량이나 거래량 등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률로 감축시키는 것으로서 가격의 유지 또는 인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시장분할협정(제4호)

- 시장 분할에 관한 합의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
- 시장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된 시장에서 각 사업자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됨으로, 경쟁 제한성은 명확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

5. 투자조정협정(제5호)

- 설비에 관한 합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일명 투자조정 카르텔이라고 한다.

6.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협정(제6호)

- 상품의 종류·규격의 제한에 관한 합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공동관리(제7호)

-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동판매 혹은 원자재의 공동구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 부문을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입찰 담합(제8호)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밖에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등의 합의를 말한다.
- 수요독점에 대항한 카르텔 위법사례(서울고법 2007. 11. 8)

9.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제9호)

제4절 공동행위의 예외인정

1. 공동행위의 인가(법 제19조 2항)

- 공동행위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시행령 제24조에서 제28조 참조).

2. 공동행위의 인가절차(법 제19조 제3항)

3.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령 제29조)

- 인가제외사유로서, i) 목적에 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 ii) 수요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iii)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iv) 공동행위에 참가 또는 탈퇴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2008. 1. 21일 공정위는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1권역(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대불단지) 소재 9개 회원사가 제출한 공동행위(담합) 인가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레미콘의 경우 원재료가 단순해 명백한 능률증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이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배정할 경우 건설사 등 수요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인 건설사들이 대부분 중소 규모인데다 레미콘 업체의 과거 공급거절 사례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교섭력이 항상 열세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

공정위는 담합이 거래 상대방 등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해 지금까지 인가를 받아 시행한 담합은 총 7건에 불과하며, 특히 최근 10년 사이 인가를 받은 사례는 전혀 없을 만큼 희귀한 제도로서, 그나마 인가를 받아 시행됐던 7건도 업계의 불황 극복이나 산업구조의 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없었으며 일정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했다가 일정기한 내 종료한 것이 전부임.

4.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 행정관청이 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행정지도를 하고 당해 사업자들이 이에 따라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되어도 원칙적으로 범위반이며, 특히 ①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기화로 별도 합의를 한 경우, ②법적 근거가 없거나 조직법상의 포괄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비공식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결과 카르텔이 유발된 경우 법 위반이다.

- 판례에 따라 외형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따른 우연한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여 공동행위의 성립가능성이 부정된 사례(대판 03.2.29, 2001두1239, 맥주사례).

제5절 범위반의 효과

1. 공동행위 합의의 효력(법 제19조 제4항)

-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하는 계약 등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임을 규정.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

2. 제재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시정조치(법 제21조) - 합의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과기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음. 가격인하명령의 경우, 독과점 규제는 부당한 가격인상 자체를 문제삼는 것에 반해, 카르텔은 가격협정을 통한 ‘경쟁제한성’을 문제 삼는 것이기에 불가함.
- 과징금(법 제22조) : 매출액의 10%이내 또는 매출액이 없으면 20억원 이내.

(2) 신고자에 대한 감면규정(법 제22조의 2)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Leniency Program 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것이다.
- 감면요건(령 제35조 제1항)

(3) 벌칙

- 제66조 제1항 제9호
- 제67조 제6호

3. 역외적용(법 제2조의 2)

- 02년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88억원, 03년 비타민 국제카르텔에 34억원의 과징금 부과.

-> 사건조사와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등에 필요한 문서송달 규정 마련(법 제53조의 3 제2항)